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998. 11. 4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10월 20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98. 11. 4) 내무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홍보선)

가.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독서생활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지역단위 소도서관으로 발전 시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동도서관의 설치·운영은 새마을문고중앙회 이천시지부회장에게 위탁함(안 제2조)
- 이동도서관은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시민독서 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행함(안 제3조)

- 이동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둠(안 제4조)
-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이천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동도서관의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5조)
-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당 사서직 1명과 운전직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장상)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독서생활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지역단위 소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함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이동 도서관의 설치운영을 새마을문고 중앙회 이천시지부장에게 위탁하고(안 제2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이천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안 제5조 제1항)은 기타 수입금의 명세가 불분명하고 이동도서관의 차량1대와 사서직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안 제6조 2항) 이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일부 수정의결

7. 기타사항 : 없음

붙임 : 1.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수정안조문대비표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8. 11. 4

제 안 자 : 내무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시민의 정서함양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정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용체계와 운영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조문상의 불부합한 문자의 표기내용률 변경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가.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을 직원채용으로 문자의 표기를 변경조정함
(안제6조, 제8조)
- 나. 이동도서관의 직원 채용요건의 자격범위중 사서직은 도서대출 담당으로, 운전직은 운전원으로 변경하며 운영 직원의 정수를 2명이상에서 2명으로 채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제6조)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6조제목중 “임용”을 “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임용”을 “채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서직”을 “도서대출담당”으로 하고, “운전직”을 “운전원”으로 하고, “2명이상”을 “2명”으로 한다.

안제8조중 “임용”을 “채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6조(직원의 임용) ① 이동도서관의 직원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문고지부 회장이 임용한다.</p> <p>② 이동도서관에는 차량1대당 사서직 1명과 운전직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p> <p>③ (생략)</p> <p>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6조(채용) ①</p> <p>· 채용</p> <p>② 도서대출담당</p> <p> 담 . . . 운전원 2명</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시행세칙)</p> <p>· 채용</p> <p>·</p>